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75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김기현 · 이성권 · 임종득
장동혁 · 김대식 · 김장겸
구자근 · 박성민 · 서일준
윤한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 2개가 설치되어, 재난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을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파견 및 유가족지원센터 구성·운영”으로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유가족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리 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생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을 “요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u>행정안전부</u> 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① ----- ----- ----- ----- ----- <u>국무총리</u> <u>소속으로</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u>행정안전부장관</u> 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u>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u>	③ ----- ----- ----- <u>국무총리가</u> ----- ----- ----- ----- ----- <u>단서</u> <u>삭제></u>

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 ⑦ (생략)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② (생략)

<신설>

④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③ <u>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생 략)	<u>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유가족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u> ④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파견 및 유가족지원센터 구성·운영-----. 제58조의2(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리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현행과 같음)
--	---

